

마리나업 등록·관리 사무, 지자체에 이양

- 5월 1일부터 광역지자체가 등록·변경·갱신 등 민원 처리
- 지역 마리나 시설과 연계하여 마리나산업 활성화 기대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5월 1일(목)부터 마리나업(마리나선박 대여업, 마리나선박 보관·계류업, 마리나선박 정비업)에 대한 등록·관리 사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한다고 밝혔다.

이는 「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」 시행(2025. 5. 1.)으로 마리나업 등록·관리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시·도지사(광역지자체)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.

그간 마리나업을 등록, 변경하거나 갱신하는 등 행정 업무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하였으나, 앞으로는 광역지자체로 사무가 이양되어 관할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다.

마리나업은 마리나선박을 대여 또는 정비하거나, 마리나선박의 보관·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등 마리나선박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. 2015년 「마리나항만법」에 따라 제도를 신설한 이후 현재는 전국 연안 지역에 약 344개소의 마리나업이 운영 중이다.

이번 마리나업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으로 광역지자체는 △마리나업 등록·변경·갱신, △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, △휴업·재개업·폐업 신고, △이용약관 신고, △선박 및 보관·계류시설의 분양 계획 접수 등 민원을 처리하게 되고,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선박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이번 마리나업 등록·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은 지방분권의 일환으로, 지방자치단체가 마리나선박을 해양레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행정업무 권한을 부여한 것”이라며, “지역에서 운영하는 마리나시설과 마리나업을 연계하여 마리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	책임자	과 장	채정재 (044-200-5250)
		담당자	사무관	김흥기 (044-200-5275)



□ 마리나업

○ 「마리나항만법」 제2조제5호

- (마리나업) 마리나선박을 대여 또는 정비하거나, 마리나선박의 보관·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,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.

○ 「마리나항만법」 제2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

- (마리나선박 대여업)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(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- (마리나선박 보관·계류업)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
- (마리나선박 정비업) 마리나선박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

□ 마리나업 등록 등 권한의 지방이양

○ 「마리나항만법」이 개정되어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던 마리나업을 '25년 5월 1일부터는 관할 지자체*에 등록

*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- **
- 현행 마리나업 등록·관리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 각 지방해양수산청이 수행
 - 변경 마리나업 등록·관리 관련 업무를 광역지자체가 수행

